

이력추적관리기준(제29조 관련)

1. 공통 적용사항

- 가. 생산·유통·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그 밖의 수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생산·유통·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(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
- 다. 생산·유통·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라. 생산·유통·판매자는 위해물질 등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.
- 마. 생산·유통·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해당 단계에서 정보를 기록한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2. 개별 적용사항

생산·유통·판매자가 관리단계 별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생산자

(1) 생산정보(원재료를 단순 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)

- ① 품목
- ② 생산자 성명
- 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- ④ 양식장 또는 염전 위치(양식수산물 또는 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), 위판장 주소 또는 어획 장소(어획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⑤ 삭제 <2026. 1. 9.>
- ⑥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(양식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하며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0조제4항·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·제12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 또는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·제34조 및 「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

·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·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)

⑦ 생산년월일(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⑧ 생산량(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)

(2) 입고정보(원재료를 건조, 염장 등 단순 처리한 제품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① 품목

② 입고처명

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
④ 날짜

⑤ 물량

⑥ 이력추적관리번호

(3) 출하정보

① 품목

② 출하처명

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
④ 날짜

⑤ 물량

⑥ 이력추적관리번호

나. 유통자

(1) 입고정보

① 품목

② 입고처명

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
④ 날짜

⑤ 물량

⑥ 이력추적관리번호

(2) 출고정보

① 품목

② 출고처명

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
④ 날짜

⑤ 물량

⑥ 이력추적관리번호

※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력추적수산물의 입고·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다. 판매자

- ① 품목
- ② 입고처명
- ③ 주소(전화번호 포함)
- ④ 날짜
- ⑤ 물량
- ⑥ 이력추적관리번호